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제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해당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종목의 변경
 - 2.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3.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 재원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연장정기보험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 재원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기간을 단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이 특약도 동일 내용으로 감액하여 드립니다. 이 때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2121522000000171457 표준하체인수특약 2911

-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제8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하는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9조 특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과 함께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 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해당계약" 가입이 가능 한 상태가 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③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0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10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3조(표준하체인수의 종류 및 세부내용)에서 정한 계약조건 중 보험금감액법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나이가산법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 부가로 할증된 표준체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1조 "해당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2121522000000171458 표준하체인수특약 2913

부표1

재해분류표



별첨2 [표 1] 참조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면책(보장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제3조 면책(보장제한) 조건의 내용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성립

제5조 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7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기타사항

제8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부표2] 특정질병분류표

[부표3] 재해분류표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해당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해당계약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 2.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피보험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이 특약을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3. 면책기간 : 이 특약에 따라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특정신체부위 :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 위를 말합니다.
- 5. 특정질병 : <부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6. 재해 : <부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관 면책(보장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제3조 면책(보장제한) 조건의 내용

- ①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특정신체 부위 보장제한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며, 2종(특정신체 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2. 특정질병
-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면책기간 설정에 대한 판단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심사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기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자동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 산정

- 이 특약을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 (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는 경우 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

- 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4.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제4항 제4호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⑥ 제4항 제4호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⑧ 제7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 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 ① 제2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합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 주계약에 부가하는 경우

이 특약을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 주계약에 부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합병증

어떠한 질환에 관련하여 생긴 다른 질환

전이

병원체 또는 종양세포 등이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 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착 및 증식 하는 상태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해당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등으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을 포 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준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입증된 경우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1. 제3조[면책(보장제한) 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경우
 - 2. 제3조[면책(보장제한) 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 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또한, 제4조(특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 에도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 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일]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7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 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8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간		
7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광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 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융 추부 (해당신경 포함)	
34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9	쇄골	
50	누골(갈비뼈)	
51	골반뼈(장골, 좌골, 치골 포함)	
52	안와골	

부표2

특정질병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병 명	분류코드	세부내용
0 0	世 市 工二 100 ~ 102	급성 류마티스열
	105 ~ 1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120 ~ 125	허혈심장질환
시자지하	126 ~ 1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질환	130 ~ 152	
	A39.5+	기타 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
나하다다하	B37.6+	칸디다심내막염
뇌혈관질환	160 ~ 169	4성 다니 내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당뇨병	G59.0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H28.0	당뇨병성 백내장
	H36.0	당뇨병성 망막병증
	M14.2	당뇨병성 관절병증
	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1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11	고혈압성 심장병
	112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질환	1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115	이차성 고혈압
	167.4	고혈압성 뇌병증
	H35.0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A1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결 핵	A16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